

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
책임투자·스튜어드십 코드 관련
진행상황 보고

2017. 9. 29.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I. 추진 배경

II. 기본 방향

III. 향후 계획(안)

IV.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논의내용

[붙임자료]

1. 기금운용체계 개편, 책임투자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

2.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주요 현황

3. 스투어드십 코드 개요

4. 연구용역 주요내용

I

추진 배경

□ 국민연금기금은 '16년말 558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

* '16년 말, 일본 공적연금기금(GPIF) 1,432조원, 노르웨이 국부펀드(GPFG) 1,050조원

○ 기금규모 성장에 따라 장기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·안정성 제고와 공적 연기금으로서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조

* '16년 558조원 → '22년 1,003조원 → '43년 2,561조원(제3차 재정계산)

□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논의 지속

○ '03년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,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를 추진, 다양한 사회적 의견으로 합의되지 못함

○ 최근에는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투명성,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

* (의결권행사)전문위원회 법정화,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개선(회의록 등 공개강화)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다수 국회 제출(11건)

**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권한 강화,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내역 공시 강화 등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

□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제기

○ 장기 투자자이며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투자 확대*와 주주활동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** 요구 확산

* ▲ 책임투자 의무화, 대상 자산군 확대, 정보공시 강화 등 책임투자 관련 법안 5건 발의, ▲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(가습기살균제 기업, 일본 전범기업 등) 투자 제한 요구 등

** '17.6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「국내주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검토」 정책제언 등

- 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·안정적인 수익 제고가 가능하며, 환경(E), 사회(S) 등 가치가 기업경영에 반영되어 사회적 편익 증대 가능
- 국민연금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(주주권 강화) 등을 통해 기업 가치 향상과 기금수익 제고가 가능

1.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

-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상 제고
 -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·책임성 강화
 -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기능을 내실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
- 기금운용의 독립성·투명성 제고
 -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등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 공개 확대
 - 국민연금기금 투자현황·자산내역 등 세부적 공시 강화

2.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

- 국민연금은 초대형 공적 연기금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*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방향 도출 필요
 - * 국민연금의 국내금융시장 점유율('16년말 기준) : 주식 6.8%, 채권 16.4%
 - **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, 기금운용 제약사항 등 검토 필요
-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,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논의

◆ 연구개요 ◆

□ 개 요

- (과제명) 「국민연금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」
- (연구기관) 고려대 산학협력단(박경서 교수 등 총 9명(고려대, 한림대, 강원대, 기업지배구조원 관련 교수, 연구원 참여))
- (기간) '17.7.24 ~ 12.20(5개월) * 연구 발주기관 : 국민연금연구원, 기금운용본부(공동)

□ 주요 내용

- (책임투자)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 사례 분석·벤치마킹 등을 통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*(단계별 로드맵, 책임투자지침 등) 도출
 - * (예시) 1단계 : 위탁운용 규모 확대 → 2단계 : 책임투자 성과평가체계,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 → 3단계 :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확대
- (스튜어드십) 해외사례 조사, 코드 도입이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, 국민연금 특성(법률상·운용상 제약)을 고려한 주주권행사 범위, 코드 7개 세부 원칙별 적용방안 등 검토

※ 연구 과정 중 사회적 공론화(이해관계자 의견수렴)를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

III

향후 계획(안)

□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

-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(~12월)
- 기금운용위원회 보고,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및 사회적 의견수렴(~18.上)
- 국회 법안심사 추진(~18년)

□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

- 연구 중간결과 도출 후 관련 내용 기금운용위원회 보고(11월말~12월초)
- 연구 결과를 토대로,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('18년 1사분기)
-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(~18.上)

* 책임투자지침, 주주권행사지침 등 기금운용 관련 지침 마련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사항

□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

- 일정계획을 고려,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

□ 국민연금 책임투자,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

- 그 간 국민연금의 투자행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며, 자산운용사 관점이 아닌 공적연금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
- 일본 GPIF 처럼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거나,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필요
-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의 경영간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
- 수익률과 책임투자가 상충될 경우, 투자원칙에 대한 고민도 필요
- 적극적 주주활동시 필요한 조직, 인력 등 인프라 확충도 중요
 - * 의안 분석기관(CGS, ISS 등)을 먼저 활용하고, 단계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- 연구용역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필요
 - *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기금위, 실평위 위원도 참여하여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

붙임 1

기금운용체계 개편, 책임투자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

구분	의원명	주요내용
1	노웅래의원 (‘16.9.12) * 더불어민주당	○ 책임투자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보,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공시 대상에 포함
2	제윤경의원 (‘16.12.7) * 더불어민주당	○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○ 기금이사 자격요건 강화(금융기관 경력 3년 →10년) ○ 실무위 위원 자격요건 강화(사회복지·경제·경영 분야 3년 → 법률·경제·경영·금융분야 5년) ○ 전문위원회* 설립근거 명시 * 투자정책전문위,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, 성과평가보상전문위 ○ 회의록,녹취록 작성 및 공개(기금위, 실평위, 전문위) * 기금위 1년후 공개, 예외적 4년후 공개 → 모든 위원회 6개월 후 공개, 예외적 1년후 공개 *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시 비공개 제출 →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1개월후 공개
3	김승희의원 (‘16.12.22) * 자유한국당	○ 기금위 산하 주주권행사위원회 설치 - 주주권 행사 사전 승인, 기준·방법·절차 심의·의결 ○ 주주권행사 세부내용 국회제출 및 공시
4	채이배의원 (‘17.1.9) * 국민의당	○ 기금이사과 기금위 위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○ 기금이사과 기금위 위원의 사익추구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○ 기금이사과 기금위 위원의 부정한 영향력행사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처벌
5	권미혁의원 (‘17.1.12) * 더불어민주당	○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공단 비상임이사로 구성 → 기금위위원으로 구성 ○ 대표소송제기권 등 「상법」상 주주권 행사 ○ 주주권전문위원회 설치 - 의결권행사, 주주감시, 주주제안 심의·자문

구분	의원명	주요내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위 위원 구성 변경* 및 임기확대(2년→3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역가입자 대표 6인 →4 인, 정부추천 관계전문가 2인 → 국회의장 추천 관계전문가 4인 ○ 기금위 월 1회이상 정례화 ○ 기금위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안전부의 및 회의개최 ○ 속기록 작성과 30일 이후 공개 의무화(1년→30일) ○ 기금운용 연차보고서 작성·공표
6	제윤경의원 ('17.1.20) * 더불어민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운용목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현재) “수익”을 최대로 증대 → (개정안) “가입자의 이익”을 최대로 증대 ○ 책임투자 대상 확대*, 책임투자 판단에 대한 기록 및 공개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현재) 증권 매매·대여 → (개정안) 기금 관리·운용 대상 전체 ○ 기금운용위원회 개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권 및 안전제안권 부여 ○ 책임투자 대상 확대, 관련 정보공개 등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고, 그 대상을 확대 * 증권 매매·대여 → 기금관리·운용 대상 전체 - 책임투자 판단에 대해 기록 및 공개 의무화
7	박정의의원 ('17.1.31) * 더불어민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위 산하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성) 공무원, 각계 추천 전문가 총 20인 * 당연직 위원 추천 공무원(5), 사용자대표 3, 근로자대표 3, 지역가입자 대표 6(농어업인 단체2, 자영자단체2, 소비자단체2), 전문가 3 추천 - (심의·의결) 의결권 행사 일반원칙, 지분율 3%이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,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8	이학영의원 ('17.2.2) * 더불어민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결권행사 관련 신의성실 의무 규정 및 의결권행사 기준 및 절차 등 내용 공시 ○ 기금운용위원회 전문가 분야 위원 수 증원(2명 → 4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기금위 총 인원) 현 20명 → 개정안 22명

구분	의원명	주요내용
9	정춘숙의원 (17.2.6) * 더불어민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결권행사 관련 신의성실 의무 규정 ○ 기금위 산하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성) 기금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위원 * (자격요건)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, 사회복지학·경제학·경영학 분야 3년 이상 재직, 금융투자기관 5년 이상 재직 - (심의·의결) 의결권 행사 일반원칙, 기업 합병·분할·인수·배당 등과 관련된 의결권, 기업지분율 5%이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,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○ 의결권전문위 회의록 작성·보관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개월 이내에 공개, 금융시장 안정 등에 우려가 있는 안건인 경우 1년 후 공개, 상임위 요구시 비공개로 회의록 제출 ○ 의결권전문위 위원에 대해 형법 위반시 공무원 의제(수뢰, 제3자 뇌물제공, 알선수뢰 등)
10	김광수의원 (17.2.16) * 국민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○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설치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성) 공무원, 각계 추천 전문가 등 총 9인 * 공무원 2, 사용자대표 2, 근로자대표 2, 지역가입자단체 2, 시민단체 1 등 총 9명 - (심의·의결) 주주권 행사 기준·방법·절차, 주주권 행사 사전승인 관한 사항 ○ 의결권 전문위 회의록, 녹취록 작성·보관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개월 경과 후 국회 상임위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록, 녹취록 제출
11	윤소하의원 (17.2.22) * 정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운용목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현재) 수익을 “최대”로 증대, 자산 종류별 “시장수익률을 넘는” 수익을 낼 수 있도록... → (개정안) 수익을 “적정수준”으로 증대, 자산 종류별 “시장수익률에 준하는” 수익을 낼 수 있도록... ○ 책임투자 의무화 ○ 전문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○ 의결권행사 관련 신의성실 의무 규정 ○ 기금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(고의·중대한 과실일 경우), 공무원 직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공무원 연대책임

구분	의원명	주요내용
12	김종훈의원 (17.3.6) *새민중정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투자 의무화 ○ 책임투자 고려 결과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투자 고려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행사, 기금 보유 주식 매각 등 방법으로 반영
13	백혜련의원 (17.3.21) * 더불어민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결권행사 관련 신의성실 의무 규정 ○ 기금위 산하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성) 각계 전문가 추천 10인 위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위원추천) 사용자단체 추천 2, 근로자단체 추천 2,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, 시민단체 추천 2, 국회의장 추천 2 * (자격요건)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, 경제학·경영학 등 전공하고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금융투자기관 또는 시민단체 5년 이상 재직 경력있는 자 - (심의·의결) 의결권 행사 일반원칙, 기업 합병·분할·인수·배당 등과 관련된 의결권, 기업지분을 5%이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, 위원장 및 위원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○ 실평위, 의결권전문위 회의록 작성·보관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개월 이내에 공개, 금융시장 안정 등에 우려가 있는 안건인 경우 1년 후 공개, 상임위 요구시 비공개로 회의록 제출 ○ 기금위, 실평위, 의결권전문위 위원에 대해 형법 위반시 공무원 의제(수뢰, 제3자 뇌물제공, 알선수뢰 등)
14	조배숙의원 (17.5.30) * 국민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투자 의무화 및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^증권 매매·대여 → ^금융기관에 대한 예입, 신탁, ^공공부문 투자, ^증권의 매매, 대여, ^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책임투자의 기준,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

1. 책임투자 개요

- (개념) 장기적·안정적 수익제고를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요소 外 환경(E), 사회(S), 지배구조(G) 등 비재무적 위험을 투자결정시 반영하는 방법
- (방식) ^투자대상 선정시 선별기준, ^투자 후에는 주주권 행사 (기업과의 대화 등)를 통해 투자기업의 개선(기업가치 제고)을 요구

2. 주요 추진현황

① 국민연금법령 및 지침 개정(제도개선)

-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 근거조항 마련('15.7시행), 책임투자 관련 현황공시('15.8),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원칙 도입('16.4)

② 위탁펀드 운용

- '06년부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책임투자 펀드* 위탁 운용 중('16년말 6.4조원, 10개 운용사)

* 위탁운용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이슈를 종합 고려하여 투자하는 펀드

<국내주식 위탁 수익률 및 책임투자 위탁펀드 수익률>

구분	'12	'13	'14	'15	'16
국내주식 위탁수익률	9.52	4.09	△4.22	4.24	0.96
BM 대비	0.77	3.46	0.04	0.72	△0.83
책임투자 위탁펀드 수익률	8.80	2.70	△7.10	5.06	0.29
BM 대비	△0.60	2.00	△2.30	1.06	△2.29

③ 책임투자 직접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·보완

- 책임투자시 활용을 위한 ESG 관련 평가지표 마련·보완(총 53개 지표), 기업 평가(총 832개 기업, 6등급 평가) 등 실시(매년 연 1회 기업평가)

* ESG 평가모형 및 지표는 지속 보완, 검증이 필요하여 평가지표별 배점, 세부기준, 기업 ESG 평가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

- 운용역이 ESG 평가정보(832개 기업)를 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(운용역 재량) 'ESG 시스템' 구축('16.12~)
- 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성격의 책임투자 가상펀드('14.8~) 운용, 평가지표 검증 등 지속 추진

1.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

- (개요) 연기금, 보험사,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
 -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 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
- (목적)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투자한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투자자 이익을 증진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
- (이행방법)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동의한 기관들에 한해 참여 · 준수하되(자율), 미이행 분야는 사유와 대안을 설명

2. 세부 내용

-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7개 원칙 제시

구분	원칙 내용
원칙①	<p><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정책 제정·공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·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원칙②	<p><이해상충 완화·방지 정책 제정·공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원칙③	<p><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원칙④	<p><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내부지침 마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원칙⑤	<p><의결권정책 제정·공개, 행사내역 및 사유공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·절차·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
원칙⑥	<p><의결권,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익자에게 주기적 보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원칙⑦	<p><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

구분	주요내용
과제명	국민연금 책임투자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
연구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책임투자) 해외 연기금 등의 책임투자 사례 및 절차, 국내 투자환경에 적합한 책임투자 방안과 이의 실행을 위한 국민연금 내부시스템 구축 등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의 도출 등 ○ (스튜어드십)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장·단점, 도입가능 수준과 이행 기준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객관적인 분석, 기금운용상 제약을 고려한 각 원칙별 도입 가능여부, 미 이행에 따른 대안 검토 등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책임투자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투자 개요(책임투자 의의, 연혁, 최근 트렌드, 주요 쟁점 등) ○ 해외 연기금·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구체적 사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선진국의 책임투자 여건(국내외 규범 등) 분석 - 해외 연기금·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규모, 이행방식(자산군별·투자활동별), 절차, 기업 ESG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항목, 배점 등 상세내용, 책임투자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체계, 내부조직구성(인원, 예산), 관련 활용자원 등의 구체적 투자메커니즘과 사례 ○ 책임투자 프로세스의 비교·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별 책임투자 정책·프로세스 도입과정상 주요 고려사항 - 자산군별·투자활동별 적용 방식(ESG 평가지표, 배점 등 세부내용과 상세 비교 등) - 투자 의사결정상 책임투자관련 내·외부 협업 형태 ○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및 구체적 방안, 책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도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스튜어드십 코드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(코드 제정 배경, 국내도입 주요 내용) ○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현황(기준, 범위, 절차, 조직), 행사의 실질적 제약, 도입 필요성 ○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국가 및 주요 해외 기관투자자의 도입사례, 주요내용, 운영현황 등(주주권 행사범위, 기준, 프로세스, 조직구성, 공시) - 국민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 간의 차이점 비교분석 및 방향성 도출 ○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입 제약여건(법률적 제약, 운영상 제약, 공적연기금의 특수성 제약 등) - 원칙 수행시 각 코드별 제약사항, 코드도입이 국가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○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튜어드십 코드 수립 방안(코드 전문) - 국민연금의 현재 이행수준 및 법적제약을 고려한 제언 - 투자시 고려사항을 반영한 각 원칙별 적용방안 검토 - 코드 이행시의 실효성, 객관성 확보방안 (독립성, 투명성 확보, 의사결정체계, 위탁기관 이행평가, 외부 자문기관 활용, 기관투자자 협력 방안 등) - 그 외 이행에 따른 공시 방식, 내부정보교류 차단기준 등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고려 - 제약조건 해소에 따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방안